

# 2024

법인결산과 세무조정

# INSIGHT UP

## 법인세 개정 및 실무이슈

### HIT THE SPOT SERIES ②

### 개정세법 PART 2



YOUR BEST HRD PARTNER  
**씨에프오아카데미**  
www.cfoi.kr



# HIT THE SPOT SERIES ②

## 개정세법 PART 2

### 2 국제조세 분야

#### 【법인세법·시행령】

#### 0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-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

(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)

〈개정취지〉 이중과세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(법인)세액(가산세 제외)</li><li>-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 및 제한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</li></ul> <p>〈단서 추가〉</p>	<p>□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 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</p> <p>(좌 등)</p> <p>- 단,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3.8.8.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

#### 02 외국인 통합계좌(Omnibus Account) 과세특례 규정 신설

(법인세법 제98조의8 신설)

〈개정취지〉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외국인 통합계좌*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</p> <p>* 국외 증권·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·결제 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</p>

-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(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 미적용)
-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# 03 비과세·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

(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, 제98조의5 제2항, 제98조의6 제4항)

〈개정취지〉 납세자 권익 보호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경정청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기한)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</li> </ul>	□ 경정청구 기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</li> <li>*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(국세기본법 §45의2①)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

### 3 법인세 분야

#### 【법인세법·시행령】

#### 0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)

〈개정취지〉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 이 주식 등의 30%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 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 기업</li> </ul>	<p>□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-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 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 방법* 규정</li> <li>*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,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#### 0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)

〈개정취지〉 납세자 혼란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업종)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어업 등</li> <li>-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</li> </ul>

### 03 R&D 세액공제 대상 자체연구개발비 범위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)

〈개정취지〉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R&amp;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퇴직소득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대상만 규정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제 대상 자체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 사회보험*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자체연구개발비 범위에 명시</li> <li>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</li> </ul> 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04 R&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)

〈개정취지〉 미래 유망산업 R&D 투자 활성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3개 분야* 258개 기술</li> <li>* ① 미래차, ② 지능정보, ③ 차세대S/W, ④ 콘텐츠,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 차세대 방송통신, ⑦ 바이오·헬스, ⑧ 에너지·환경, ⑨ 융복합소재, ⑩ 로봇, ⑪ 항공·우주, ⑫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, ⑬ 탄소중립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대상법률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4개 분야 270개 기술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(분야) 방위산업 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(기술) 신규 15개, 확대 8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신규) 15개 신규 기술 추가</li> </ul>

분 야	세부기술
에너지·환경(3개)	대형원전 제조기술 등
로봇(1개)	Non-coding 교시기술
첨단소부장(5개)	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 기술 등
탄소중립(3개)	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
방위산업(3개)	추진체계 기술 등

- (확대) 8개  
현행 기술 범위 확대

분 야	세부기술
미래형자동차(1개)	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→ 운행기록 추가
바이오·헬스(2개)	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→ 제조기술 추가 등
에너지·환경(2개)	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-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
로봇(1개)	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→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
탄소중립(2개)	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→ 항공유 추가 등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## 05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)

〈개정취지〉 첨단 전략산업 R&D 투자 활성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국가전략기술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개 분야 62개 기술*</li> </ul> <p>* ① 반도체 22개, ② 이차전지 9개, ③ 백신 7개, ④ 디스플레이 5개, ⑤ 수소 6개, ⑥ 미래형이동수단 5개, ⑦ 바이오의약품 8개</p>	<p>□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개 분야 66개 기술</li> </ul>

<추 가>

- (기술) 신규 4개, 확대 1개

- (신규) 4개  
신규 기술 추가

분 야	세부기술
디스플레이(1개)	OLED 화소형성·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
수소(3개)	수소 가스터빈(혼소·전소) 설계 및 제작 기술 등
	수소환원제철 기술
	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

- (확대) 1개  
현행 기술 범위 확대

분 야	세부기술
반도체(1개)	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·제조 기술 → HBM 등 추가

<적용시기 및 적용례>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## 06 R&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)

<개정취지> 정부 출연금을 통한 R&D 확대 지원

<개정내용>

종 전	개 정
<p>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R&amp;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</li> <li>• (내용)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, 연구 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 산입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

## 07 기술 이전·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)

〈개정취지〉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&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기술 이전·대여소득 세액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</li> <li>• (내용)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%, 대여 소득의 25% 세액감면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5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## 08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, 제99조의9, 제121조의8, 제121조의9, 제121조의17, 제121조의20, 제121조의21, 제121조의22)

〈개정취지〉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감면대상)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·법인세 감면</li> <li>• (감면적용 특구)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5px 0;">(좌 동)</div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특구명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감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위기지역</td> <td>5년 100%+2년 50%</td> </tr> <tr> <td>농공단지</td> <td rowspan="2">5년 50%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</td> </tr> <tr> <td>연구개발특구</td> <td rowspan="10">3년 100%+2년 50% (사업시행자는 3년 50%+2년 25%)</td> </tr> <tr> <td>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</td> </tr> <tr> <td>제주투자진흥지구</td> </tr> <tr> <td>기업도시</td> </tr> <tr> <td>지역개발사업구역</td> </tr> <tr> <td>여수해양박람회특구</td> </tr> <tr> <td>새만금지구*</td> </tr> <tr> <td>아시아문화중심도시</td> </tr> <tr> <td>금융중심지</td> </tr> <tr> <td>첨단의료복합단지</td> </tr> <tr> <td>국가식품클러스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특구명	감면율	위기지역	5년 100%+2년 50%	농공단지	5년 50%	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	연구개발특구	3년 100%+2년 50% (사업시행자는 3년 50%+2년 25%)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	제주투자진흥지구	기업도시	지역개발사업구역	여수해양박람회특구	새만금지구*	아시아문화중심도시	금융중심지	첨단의료복합단지	국가식품클러스터	
특구명	감면율																			
위기지역	5년 100%+2년 50%																			
농공단지	5년 50%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특구	3년 100%+2년 50% (사업시행자는 3년 50%+2년 25%)																			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																				
제주투자진흥지구																				
기업도시																				
지역개발사업구역																				
여수해양박람회특구																				
새만금지구*																				
아시아문화중심도시																				
금융중심지																				
첨단의료복합단지																				
국가식품클러스터																				



\*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'25년말 종료

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

• 2025.12.31.

## 0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요건 규정

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)

〈개정취지〉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제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/중견/중소 : 3/7/10%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세액공제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본공제율) 대/중견/중소 : 5/10/15%</li> <li>- (추가공제율*) 대/중견/중소 : 10/10/15%</li> </ul> </li> <li>*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(시행령에서 규정)</li> </ul> <p>□ 추가공제 요건 규정(①, ② 모두 충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% 이상</li> <li>②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작가·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% 이상</li> <li>㉡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% 이상</li> <li>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% 이상</li> <li>㉣ 주요 IP* 중 3개 이상 보유</li> </ol> </li> </ol> <p>*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방송권, 전송권, 공연권, 복제권, 배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## 10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)

〈개정취지〉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환산식) (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) ÷ (해당과세 연도 근무제공월수) × 12</li> <li>• (적용대상) 근로소득금액, 평균임금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(좌 등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소득금액</li> </ul> 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 11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)

〈개정취지〉 정규직 전환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</li> <li>• (요건)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2022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</li> <li>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• (공제금액)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,300만원, 중견 900만원</li> <li>• (사후관리)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 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(요건)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2023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</li> <li>② (좌 등)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(좌 등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4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**12**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)

〈개정취지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규직 근로자* : 1명</li> <li>*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, 특수관계인 등 제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산휴가자*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</li> </ul> </li> <li>*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(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)</li> <li>•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 시간근로자 : 0.5명</li> <li>• 일정요건*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: 0.75명</li> <li>*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</li> <li>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</li> <li>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,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</li> <li>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% 이상</li> </ul>	<p>□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(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024.2.29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**13** 고용유지 중소·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)

〈개정취지〉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고용유지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중소기업, 위기지역* 중견기업</li> <li>*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</li> <li>• (요건) 근로시간 단축*을 통해 고용유지</li> <li>*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</li> <li>• (공제금액) ㉠+㉡</li> <li>㉠ 임금감소액 × 10%</li> <li>㉡ 임금보전액* × 15%</li> <li>* 시간당 임금이 105%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</li> <li>※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감소분의 50% 소득공제 (1,000만원 한도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

## 1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및 세부사항 규정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,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)

〈개정취지〉 해외자원개발 활성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광업권·조광권 취득 투자</li> <li>② 광업권·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 법인에 대한 출자</li> <li>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</li> </ol> </li> <li>• (공제율) 투자 또는 출자액의 3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6.12.31.</li> </ul>
<p>□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 세제지원)</li> </ul>	<p>□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제 대상 추가</li> </ul>

- 통합투자세액공제
  -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
- 〈추 가〉

〈신 설〉

〕 (좌 등)

-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

□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

- (출자) 출자비율 10%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①, ②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
  -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,
  - ② 광구 개발·운영 목적 설립
- (투자) 외국자회사\*에 대한 다음의 투자
  - \*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%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
  - 내국인\*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 하는 투자
  - 내국인\*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 대여 투자
  -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\*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
  - \*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%를 보유한 내국인

□ 추정세액 범위 : ① + ②

- ① (세액공제액 상당액)
  -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·회수한 경우 :
 
$$\text{세액 공제액} \times \frac{\text{이전·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}}{\text{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}}$$
  -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: 세액공제액 전액
- ② (이자상당가산액) 추정대상 일수<sup>1)</sup> × 이자율<sup>2)</sup>
  - \* 1)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
  - \* 2) 1일 10만분의 22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, 제11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)

〈개정취지〉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감면대상)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 장을 국내로 이전·복귀하는 기업</li> <li>• (감면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·법인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하는 경우 : 5년 100% + 2년 50%</li> <li>②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: 3년 100% + 2년 50%</li> </ul> </li> <li>- 관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완전복귀 : 5년 100%</li> <li>② 부분복귀 : 5년 50%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(완전복귀) 국외사업장 양도·폐쇄 (부분복귀) 국외사업장 축소·유지</li> <li>• (업종요건) 대통령령으로 위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기한) 2024.12.31.</li> </ul>	<p>□ 감면 폭·기간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소득·법인세 감면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7년간 100% + 3년간 50%</li> <li>② (좌 동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법률로 상향입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*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</li> </ul> </li> <li>*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유사성 판단 기준,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

## 16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)

〈개정취지〉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경제자유구역·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성장·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업</li> </ul> </li> <li>•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투자금액 1,0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업, 전기통신업 등</li> <li>-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/ul>

## 17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15 제1항)

〈개정취지〉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·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광호텔업·수상관광호텔업</li> <li>-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, 관광 식당업, 마리나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산업, 노인복지시설, 국제학교, 청소년 수련시설, 교육원, 의료기관 등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대상 확대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궤도사업,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</li> <li>- 식료품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, 곡물가공품·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, 기타 식품 제조업,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제외</li> </ul> </li> <li>- 음료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알코올 음료 제조업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> <p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삭 제)</li> </ul> <p>-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삭 제)</li> </ul> </div> </div>
--	--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(다만, 2024.2.29. 전에 제주투자진흥 지구에 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)

**18** **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**  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, 제121조의19,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)

〈개정취지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감면내용)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·법인세를 감면</li> <li>• (감면적용 특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도시, 지역개발사업구역 등</li> </ul> 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li> <li>• (감면율) 3년 100% + 2년 50%(사업시행자는 3년 50% + 2년 25%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5.12.31.</li> </ul> </li> <li>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지역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 </li> <li style="margin-top: 10px;">}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화경제특구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지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지역)</li> </ul> </li> </ul>



- ① 기업도시개발구역
- ② 지역개발사업구역 등
- ③ 여수해양박람회특구
- ④ 새만금투자진흥지구

〈추 가〉

- (창업기업 투자·고용요건)
  - (연구개발업) 투자금액 5억원, 상시근로자 10명 이상
  - (물류·유통업) 투자금액 10억원, 상시근로자 15명 이상
  - (제조업 등) 투자금액 20억원, 상시근로자 30명 이상
- (개발사업 투자요건)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

(좌 등)

⑤ 평화경제특구

(좌 등)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

## 19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19)

〈개정취지〉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지역개발사업구역·지역활성화지역 창업 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른 지정해제 〈단서 신설〉</li> <li>• 투자·고용 요건 미달</li> <li>•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</li> </ul>	□ 추징사유 합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외사유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공사·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<p>〕 (좌 등)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## 20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,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신설)

〈개정취지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기회발전특구*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</p> <p>*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에 따른 기회발전특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기업</li> <li>• (감면율)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 + 이후 2년간 50% 소득·법인세 감면</li> <li>• (감면한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·서비스업 2,000만원)</li> </ul> </li> <li>• (최저한세) 50% 감면기간만 적용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6.12.31.</li> </ul>
〈신 설〉	<p>□ 감면대상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조업, 연구개발업,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</li> </ul> <p>□ 투자누계액의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*에 대한 투자 합계액</li> <li>*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, 건설 중인 자산, 무형자산(영업권, 상표권, 특허권, 광업권 등)</li> </ul>
〈신 설〉	<p>□ 상시근로자·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상시근로자)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임원 및 최대 주주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(청년 상시근로자) 상시근로자 중 15~34세(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)인 근로자</li> </ul> <p>□ 상시근로자·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(청년)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</li> </ul> <p>□ 서비스업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·임·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,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</li> </ul> <p>□ 상시근로자의 수 감소 시 추정세액 계산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*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</li> <li>* 청년,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, 그 외 상시근로자 1,500만원</li> </ul>

□ 감면 신청방법

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(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

21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①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)

〈개정취지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·인수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 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과세특례)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% 세액공제 -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: ① 또는 ②</li> <li>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×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li> <li>② 매입가액 -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×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li> <li>• (지분율 요건)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% (경영권 인수시 지분 30%) 초과 취득</li> <li>• (취득기간)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</li> </ul>	<p>□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× 기준종족사업 연도*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* 취득 주식등이 출자총액의 50%(경영권 확보 시 30%)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사업연도</li> <li>② 매입가액 -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기준종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*까지 *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 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주식등을 최초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## 21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### ②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, 제1조의4 제4항)

〈개정취지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·인수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과세특례) ‘기술가치금액’의 10%를 합병·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</li> <li>• (기술가치금액*) Max(㉠, ㉡)</li> </ul> <p>*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㉠ :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</li> <li>- ㉡ : 양도가액 - 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30%)</li> </ul>	<p>□ 세액공제 범위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(좌 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양도가액 - 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20%)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

## 2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

### ①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

(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)

〈개정취지〉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벤처기업 등*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</p> <p>* 창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 전문회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창투사,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적용대상 확대</p>

- ② 창투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
- ③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

〈추 가〉

• (적용기한) 2025.12.31.

- ④ 창투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

• (좌 동)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2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

- ②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(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2)

〈개정취지〉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①~②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</li> <li>②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출자방법)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(구주매입 제외)</li> <li>• (공제액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①, ②를 통한 취득) 출자가액의 5%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①~③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좌 동)</li> <li>② (좌 동)</li> <li>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•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세액 공제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(③을 통한 취득) 출자 시 투자금액*의 5% +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%</li> </ul> </li> </ul> <p>* Max(출자가액, 모펀드 투자액의 60%)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(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)

**23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**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)

〈개정취지〉 벤처투자 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</p> <p>*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(조특법§13)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제외</p> <p>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④ 금융운용법인등</p>	<p>□ 제외대상 추가</p> <p>①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</p> <p>□ (좌 동)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**2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**

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신설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)

〈개정취지〉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</p> <p>• (적용대상) 중소·중견기업</p> <p>- (제외)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(제작사)</p>

- (제외)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(제작사)
- (공제대상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\*
- \*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기준
  - (대상 콘텐츠) 영화, TV프로그램, OTT콘텐츠
  - (제외비용) 접대비, 광고·홍보비,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
- (공제율) 3%
- (공제시기) 최초 상영·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
- (적용기한) 2025.12.31까지 출자한 경우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 25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)

〈개정취지〉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지원내용)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·중견기업 75%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</li> <li>• (대상자산) 에너지절약시설</li> <li>• (적용기간) 2023.1.1. ~ 2023.12.31. 취득분</li> </ul>	□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~ 2024.12.31 취득분</li> </ul>

## 26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

(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)

〈개정취지〉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p>□ 무역조정지원기업* 과세특례</p> <p>* FTA 발효로 매출액·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요건) ① + ②</li> <li>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</li> <li>②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 자산 취득</li> <li>• (과세특례)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종료</p>

## 27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, 제39조, 제40조, 제44조)

〈개정취지〉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p>□ 재무구조개선계획*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</p> <p>*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, ② 채권은행 자율협의 회와의 특별약정,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,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li> </ul> </li> <li>②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 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주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</li> <li>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li> </ul> </li> <li>③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 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주)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



- (해당법인) 자산수증이의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
  - (금융기관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
 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의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(적용기한) 2023.12.31.

• 2026.12.31.

## 28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)

〈개정취지〉 지주회사 설립·전환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지주회사 설립·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과세이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특례)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</li> <li>-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 </li> <li>② 분할납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특례)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</li> <li>- (적용기한) 2024.1.1. ~ 2026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□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2026.12.31.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2027.1.1. ~ 2029.12.31.</li> </ul>

## 29 금융기관의 자산·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)

〈개정취지〉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*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적기시 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</li> <li>• (과세특례) 순부채액*을 손금산입</li> <li>* 이전받은 부채가액 - 이전받은 자산가액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	□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

**3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**

(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)

〈개정취지〉 지역균형발전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*하는 경우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</li> <li>• (과세특례)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**31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**

(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~제68조)

〈개정취지〉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</li> <li>• (과세특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법인세) 소득 종류별*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</li> <li>* (식량작물재배업) 전액 면제(식량작물 외 작물 재배업, 어로어업, 그 외 사업소득) 일정 한도 내</li> <li>- (배당소득세) 조합원·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

- (양도소득세)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  
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

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

┌ (좌 동)

• 2026.12.31.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(법인세·배당소득세)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
(양도소득세) 2024.1.1.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2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)

〈개정취지〉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어로어업소득) 3,000만원 × 조합원수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</li> <li>• (어로어업 외 소득) 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</li> </ul>	<p>□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) 3,000만원 × 조합원수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</li> <li>• (어로어업·양식어업 외 소득) 1,200만원 × 조합원수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### 33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)

〈개정취지〉 감면 등 대상 소득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소득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량작물재배업소득 : 전액(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)</li> </ul>	<p>□ 감면 등 소득 범위 명확화</p> <p>┌ (좌 동)</p>

-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: 50억원 × 소득률  
(배당소득 분리과세)
- 작물재배업 외 소득 : 5년간 50% 감면  
(배당소득 분리과세)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축산업·  
임업 소득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 
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
- \*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·공급  
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·종균배양  
③ 농산물 구매·비축  
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·수리·보관  
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·관리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 
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

(좌 등)

- 수입 농산물의 유통·판매 소득은 제외

### 34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2)

〈개정취지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내국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*로 인해 지급 받은 손실보상금</li> <li>*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,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조치</li> <li>• (특례)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</li> <li>• (신청방법) 과세표준신고 시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 함께 제출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분부터 적용

## 3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, 제100조의16, 제100조의18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5, 제100조의8)

〈개정취지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p>□ 동업기업 과세특례*의 중복 적용 제한</p> <p>* 동업기업(법인)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(주주)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 소득 과세</p> <p>•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예외 신설</p> <p>• (좌 동)</p> <p>– (예외)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*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**</p> <p>*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</p> <p>* * [최초 출자자(과세) → 모펀드(비과세) → 자펀드(비과세)] 허용</p>
<p>□ 동업기업 소득금액·결손금 계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·결손금 계산방법 규정</p> <p>• 하위 동업기업(자펀드)의 소득금액·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(모펀드)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·결손금 : ①×②×③</p> <p>*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</p> <p>②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 배분비율</p> <p>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</p>
<p>□ 동업기업 소득금액·결손금구분</p> <p>•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·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거주자군·비거주자군·내국법인군·외국법인군으로 구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소득금액·결손금 구분방법 규정</p> <p>• (좌 동)</p> <p>•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·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 따름</p>

- 결손금 배분 제한
  - (수동적 동업자) 배분 불가
  - (능동적 동업자)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

〈신 설〉

-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
- 〈신 설〉

-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결손금 배분 제한 방법 규정

(좌 동)

-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상위 동업 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에게 배분 가능

-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 배분방법 규정

- 상위 동업기업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3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### 3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

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)

〈개정취지〉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용 증가없음 : 임금증가액</li> <li>② 고용·임금 모두 증가 : 기존근로자 임금증가액×1.5 + 신규근로자 임금증가액×2</li> <li>③ 청년 및 당기 정규직 전환근로자 수 증가시 추가 공제 : 해당 임금증가액×2 (②, ③ 중복 산입 불가)</li> </ul> </li> <li>•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</li> <li>*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의4) 규정 준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상시근로자 수,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

- 임금증가금액
    -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\* 지급액 증가액
    - \* 「소득세법」상 근로소득
- 〈신 설〉

- 산정방식 구체화
  - (좌 동)
  -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# 3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

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)

〈개정취지〉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<p>□ 미환류소득*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 방법 : 각 사업연도 소득 + 가산항목 - 차감항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※ 미환류소득 : ① 또는 ②를 선택하여 산정</p> <p>① 투자포함방법 = [기업소득 × 70% - (투자액 + 임금증가액 + 상생협력 출연금액 × 300%)]</p> <p>② 투자제외방법 = [기업소득 × 15% - (임금증가액 + 상생협력 출연금액 × 300%)]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기업소득 가산항목)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,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등</li> <li>• (기업소득 차감항목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</li> <li>- 법령상 의무적립금</li> <li>- 이월결손금</li> <li>-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</li> <li>- 외국기업지배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 제〉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### 37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)

〈개정취지〉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신용회복목적회사(국민행복기금)* 출연 금액 손금산입</p> <p>* 국민행복기금 :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, 금리·만기 등 조정,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한국자산관리공사     〈추 가〉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4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     - 금융기관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)

〈개정취지〉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신용회복목적회사* 지원 과세특례</p> <p>* 국민행복기금 :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, 금리·만기 등 조정,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과세특례)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 산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</li> <li>-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(익금산입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3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6.12.31.</li> </ul>



### 3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)

〈개정취지〉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동업기업 적용범위 합리화에 따른 신청 방법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 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 기업과세 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

### 40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)

〈개정취지〉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해외건설자회사*를 둔 국내건설모회사</li> <li>*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현지법인으로서 해외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% 이상 보유</li> <li>• (적용요건) ①~④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(지분율 90% 이상)에 지급한 대여금*</li> <li>* ① 이자 및 ②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 포함</li> <li>②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</li> <li>③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</li> </ul> </li> </ul>

④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: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잠식\*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외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

\* 누적 결손금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이거나, 순자산 평가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

• (손금한도) (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- 해외건설자회사 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\*) × 손금산입 비율\*\*

\* 자산총액 -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

\*\*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: 매년 10% 상향

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~	2033년 이후
비율	10%	20%	30%	~	100%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 부터 적용

#### 41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~제121조의31, 제117조)

〈개정취지〉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</p> <p>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-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p> <p>②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 시 - (주주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p> <p>③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 시 - (주주) 증여자자산가액 손금산입 -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- (해당법인)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p> <p>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- (금융기관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p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

-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
  -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
  - 증권거래세 면제
-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
  -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(적용기한) 2023.12.31.

• 2026.12.31

## 4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

①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)

〈개정취지〉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여건 개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용한도 : 접대비 한도액의 20%</li> <li>•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 공연·전시회, 박물관, 체육 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</li> <li>- 비디오물, 음반·음악영상물, 간행물 구입비용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□ 문화 업무추진비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            (좌 등)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원시설 이용권·입장권 구입비용</li> <li>- 수목원·정원 입장권 구입비용</li> <li>- 케이블카(궤도시설) 이용권 구입비용</li> </ul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3.6.7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**42**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

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(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)

〈개정취지〉 전통시장 지원 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								
<p>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한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일반기업) 1,200만원</li> <li>- (중소기업) 3,6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입금액별 한도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수입금액 구간</th> <th>한 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억원 이하</td> <td>0.3%</td> </tr> <tr> <td>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</td> <td>0.2%</td> </tr> <tr> <td>500억원 초과</td> <td>0.0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• 추가 한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한도)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‘기본한도 + 수입금액별 한도’의 20% 추가</li> <li>- (적용기한) 2025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수입금액 구간	한 도	100억원 이하	0.3%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0.2%	500억원 초과	0.03%	<p>□ 손금산입 한도 확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좌 동)</li> <li>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한도)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‘기본 한도 + 수입 금액별 한도’의 10% 추가</li> <li>*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,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지출액 제외</li> <li>- (적용기한) 2025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수입금액 구간	한 도								
100억원 이하	0.3%								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0.2%								
500억원 초과	0.03%								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